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52
------------	------

발의연월일 : 2017. 3. 29.

발의자 : 정용기 · 김승희 · 박덕흠
이은권 · 김태흠 · 이명수
유민봉 · 강길부 · 김성원
장석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 중단 및 해제지역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p> <p>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p> <p>1. ~ 8. (생 략) <u><신 설></u></p> <p>③ ~ ⑤ (생 략)</p>	<p>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u> <u>하는 재원</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